

「프로그램 변경은 취재협력자의 기대권 침해」

- 도쿄 고법, NHK 등에 손해배상 판결 -

중군위안부 문제를 취급한 NHK 교육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취재에 협력한 시민단체 등이 프로그램의 변경에 의해 신뢰 이익(기대권)을 침해당했다고 NHK와 2개의 제작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도쿄 고등법원은 지난 1월 29일 재하청(再下請) 제작회사에만 100만 엔의 지불을 명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NHK를 포함한 3개사에 총 200만 엔의 지불을 명했다. 재판부는 NHK가 “국회의원들의 의도를 존탁(忖度=남의 마음을 미루어 헤아리는 것)하여 지장이 없도록 프로그램을 변경했다”고 지적, 시민단체의 기대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했다. 기대권에 대해서는 “기대를 갖게 되는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에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되어야만 한다”고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으나, 어떠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앞으로 취재·보도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전쟁과 여성에의 폭력』일본 네트워크(바아네트)가 중심이 되어 열린 민간 법정 등을 문제 삼은 ETV 2001시리즈 「전쟁을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 추궁되는 전시성(戰時性) 폭력」으로, 제작을 NHK 엔터프라이즈 21(이하 NEP)이 수주하고, 취재는 재하청 제작회사인 「도큐멘터리·재팬」(이하 DJ)이 담당했다.

판결에 의하면, DJ는 취재 의뢰 시에 여성 법정의 기록성을 중시한 프로그램이라는 취지의 프로그램 제안표를 바아네트에 넘기면서 그 취지를 설명했다. 바아네트는 이를 신뢰하고 취재를 응낙, DJ의 요구에 응해 사전에 내부취재라든가 당일의 촬영장소 등에 대해 특별한 편의를 제공했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NHK의 프로그램 교양부장의 “객관적·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교양 프로그램으로서의 관점이 결여되어있다”는 판단에 의해 재편집 되었는가 하면, 통상 시사(試寫)에는 입회하지 않는 방송총국장, 국회담당의 종합기획실 담당국장 등의 지시에 의한 수정이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는 44분의 프로그램이 40분으로 편집되어 방송되었다.

바아네트 측은 NHK 측을 신뢰하고 많은 편의를 제공했음에도 “당초의 프로그램의 취지를 크게 이탈한 프로그램으로 변경되어 방송되었다”고 주장했으며, NHK 측은 “취재대상자의 기대대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의무는 없으며 그러한 의무를 지우는 것은 편집의 자유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반론했다.

이에 대해 1심 도쿄 지법은 2004년 “취재 시에 신뢰를 하게끔 설명을 한 점에서 과실이 있었다”며 DJ의 기대권 침해를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NHK와 NEP에 대해 “프로그램 편집은 방송사업자에게 보장된 방송 프로그램 편집 자유의 범위 내에 있다”고 침해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내려, 바아네트 측과 DJ는 항소했다.

항소심은 2005년에 결심예정이었으나, 그 직전 아사히신문이 NHK 간부가 프로그램 방송 전에 자민당 의원과 회동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프로그램 제작자의 내부고발도 이어져 새로운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아네트 측의 요구에 따라 고등법원은 심리를 속행했으며, 기대권 침해와 함께 프로그램 변경에 정치적 압력의 영향이 있었는지의 유무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취재대상자의 기대권을 인정한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은 양분되고 있다. 정치인들의 악용과 보도기관의 과도한 위축을 걱정하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개별적인 사정이며 일반화 될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NHK는 즉시 상고했으며 이에 대한 최고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신문연구』, 2007년 3월호)



도 프라이버시권과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촬영의 방법은 몰래카메라 촬영에 해당하며 “정당한 취재행위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 다나카 씨 측의 선거활동에 정신적 고통 등의 지장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권,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문협회보』, 2007년 2월 27일자)



TV 프로의 해외 시청 서비스는 방송국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

- 도쿄 지법, 금지청구 인정 판결 -

선거사무소를 몰래 촬영한 행위는 정당한 취재행위 범위 일탈한 위법

- 일본 니이가타 지법 나가오카 지부 판결 -

선거사무소를 몰래 촬영 당했다고 田中眞紀 참의원 의원(자민)과 동 의원의 후원회 등이 후지(富士)텔레비전에 대해 총 2,5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니이가타(新潟)지방법원 나가오카(長岡)지부는 선거 활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 후지 텔레비전 측에 36만 엔의 지불을 명했으며, 항소가 없어 판결은 확정되었다.

판결에 의하면, 후지 텔레비전은 2004년 참의원 선거 때 동년 6월 20일부터 29일까지 니이가타현 나가오카시에 있는 다나카 씨의 선거사무소를, 맞은편 민가에 설치한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 이에 대해 다나카 씨 측은 선거활동의 자유 외에

해외 등에서 일본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일본 디지털 가전(家電·하마마쓰시)에 대해 NHK와 민간방송 9개사가 서비스의 금지를 청구한 가처분 재판에서 도쿄 지방법원은 지난 3월 30일 이 신청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된 서비스는 「ロクラクⅡビデオデッキレンタル」(록락Ⅱ 비디오텍 렌탈)로 일본 디지털 가전이 독자적으로 제조하여 판매·대여하는 2대의 하드디스크 레코더「록락Ⅱ」을 사용한다.

모기기(母機器)는 동 회사가 일본 국내에 설치하고, 이용자는 해외 등에서 자기기(子機器)를 조작하여 프로그램을 녹화 혹은 시청하는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재판부는 방송국의 복제권,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와 유사한 가처분 재판에서 2005년 11월 エフエービジョン(에페비전·千葉縣松戸市)의 「녹화

네트」의 금지가 知財 고등법원에서 인정된 바 있다. 한편 소니의 시판제품을 이용한 나가노 상점의「まねきTV」(마네끼 = 초대, 초청이라는 뜻)에 대한 금지 청구는 기각된 바 있다.

(『신문협회보』, 2007년 4월 24일자) □

“언론의 자살보도가 모방 자살을 불러 올 수 있다”

- 자살 예방 단체 주장 -

한 자살 예방 단체가 인터넷 신문에서 자살을 보도하는 것이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PCC의 개정된 윤리강령 제5조항에 따르면 언론들은 자살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사용된 자살 방법에 대한 과도한 세부 사항을 피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자살 예방 자선단체인 ‘파피루스’는 채팅방에서 자신의 자살을 방송한 케빈 윗트릭 사건을 인용하면서 “자살 보도에 관한 PCC의 윤리 강령은 실질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파피루스’의 위원장인 앤 패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론 보도의 자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이 자살을 모방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하지만 이미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언론이 묘사한 타인의 자살 방식을 보면서 자신도 같은 방식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앤 패리는 “윗트릭의 사건에서 『선데이 브로드시트』의 보도 태도가 특히 불만족스러웠으며 여타 지역 언론 역시 때로는 매우 선정적인 타블로이드 신문들과 비슷하게 보도했다”고 말하고 “특히 지역 언론들은 지역의 소식을 자세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특성상 더욱 자세한 정보를 기재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윗트릭 사건을 보도했던 『선데이 머큐리』의 편집장인 데이비드 브룩은 “이번 사건은 인터넷에서 방송돼 이미 대중에게 공개되고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이 윗트릭의 행동을 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가장 잔인한 세부사항들은 제외시켰고 입수되었던 사진도 인터넷상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또한 그의 자살보다 그의 자살을 훑쳐보던 인터넷 유저들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셰필드 대학의 원로 강사이자 작가인 토니 하콧은 “자살 사건에 대한 보도가 중요한 것인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그는 “예를 들어, 경찰의 관리 하에 있던 사람이 자살을 한 것으로 주장되고 그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있다면 이는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느 개인 한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삶을 버리는 것일 경우 이를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며 자살 사건 보도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브룩은 “다만 자살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며 “우리는 올바르게 고치기 위해 알아야 할 권리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Press Gazette 2007년 4월 13일자) □

「취재원 비닉 위해 증언 거절할 수 있다」

- 도쿄 고법, 거듭인정 -

지난 2006년 10월 3일 일본 최고재판소와 도쿄

고등법원이 「취재원 비닉을 위해 증언을 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한데 이어 도쿄 고법이 다시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미국의 건강식품회사의 과세처분에 대한 보도의 촉탁증인심문과 관련, 월간지 「테미스」(테미스사 발행)의 편집인 등이 취재원에 관한 증언을 거절한 사안의 당부(當否)를 둘러싼 항소심에서 도쿄 고법 제24민사부는 지난 2월 22일 “기자의 취재원 비닉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지난해 10월 3일의 최고재판소 결정을 인용, 1심 결정보다 광범위하게 증언 거절을 인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취재의 시기 등 10개의 질문에 대해 “다른 질문과 겹쳐서 보면 정보원의 특정(特定)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 새롭게 증언거절을 인정했다. 식품회사 측이 상소를 하지 않아 결정은 확정되었다.

그러나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지난해 8월 15일 취재원 비닉을 이유로 취재원에 관한 증언을 거부한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지의 기자 2명에 대해 증언을 명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어 9월 21일에는 증언을 거부한데 대해 법정모욕죄를 적용, 수감명령을 내려 일본 법원들과는 대조를 이루었다.

(『신문협회보』, 2007년 3월 6일자) □

BBC의 예정보도에 사전금지명령 영국 왕립법원, “수사에 지장 있다”

영국의 여당인 노동당이 선거 자금의 용자를 받으면서 보증인으로 상원의원을 추천했다는 의혹에 관한 보도를 예정하고 있던 BBC에 대해 왕립법원은 “수사에 지장이 있다”는 법무장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3월 2일 방송의 금지를 명했다.

BBC는 보도를 보류했으나, 6일자 『가디언』지를 시작으로 다른 매체들이 BBC가 예정했던 내용을 보도하게 됨으로서 금지는 해제되었는데, 당초의 BBC의 자세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리도 있었으며 법무장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치개입’의 비판도 적지 않다.

법정모욕죄를 이유로 한 보도의 사전금지는 테러 관련 사건에서는 내려지는 경우가 있으나 기소 전에 내려지는 경우는 보기 어렵다. BBC는 용자의혹의 보도를 위해 런던경찰청 등에 ‘사실 확인과 상대방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취재를 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수사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법무장관에게 보도의 금지를 요청했던 것이다.

(『신문협회보』, 2007년 3월 13일자) □

테러조직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서 입증취재 없고 진실 상당성 인정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

- 일본 도쿄지방법원 판결 -

“국제 테러조직 알 카에다와 관련이 있다”고 보도되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일본 사이다마현(埼玉縣)에 사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이슬람 모하멧 히무(남)와 그가 경영하는 회사가 니혼(日本) 텔레비전에 1,000만 엔의 손해배상과 7개 신문에의 사죄광고 게재를 청구한 소송에서 도쿄지방법원 민사 제16부는 2006년 10월 27일 일부의 보도에 명예훼손이 있음을 인정, 니혼 텔레비전 측에 220만 엔의 지불을 명하고, 사죄광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문제가 된 것은, 동사가 2004년 5월 26일과 27일에 방송한 『뉴스대시』, 『NNN24』 등의 프로그램인데, 재판부는 이 프로 가운데 “원고 허무가 위조 프리페이드 카드(prepaid card)의 밀매로 억(億) 단위의 이익을 올려, 그것이 알 카에다 관련 조직에 흘러들어간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에 대해, 충분한 입증취제도 없었고 진실 상당성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니혼 텔레비전 측은 항소하지 않았으며, 판결은 확정되었다.

(『신문협회보』, 2006년 11월 21일자) □

일본의 신문·방송들 기사 도용, 날조로 곤욕 임원급 징계로 책임 추궁

최근 일본의 신문사들과 방송사들은 사실과 기사, 프로그램의 도용, 날조 등으로 큰 곤욕을 치루고 있으며, 사장이 직접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임원급 편집간부들이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는 등 언론의 불신이 확산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기사 도용, 프로그램 날조 등으로 사장이나 임원급 이상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별로 없는 한국의 경우와는 극히 대조적이다. 다음은 그 중 몇 가지 사례다.

사례1) 사설 도용으로 신문사 사장 사임

『아마나시』 일일신문사는 지난 2월 20일 전 논설위원장이 집필한 사설에 『고베신문』과 『서일본신문』의 사설과 유사한 기술(記述)이 10군데 정도 확인된 데 이어 새로이 15건의 도용(盜用)이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野口榮一 회장

겸 사장이 사임을 표명했으며, 전 논설위원장은 해고됐고, 西川勝仁 상무이사를 이사로 강등시키는 한편, 편집국장에게는 3개월 감봉(20%)의 처분이 내려졌다. 사실 역시 2월 21일부터 게재가 중지됐다. 4월 1일부터 재개됐다.

(『신문협회보』, 2007년 2월 13일, 27일자, 4월 3일자)

사례2) 아사히신문, 기사 도용으로 편집국장 경질

『아사히신문』사는 지난 2월 6일 사진기자에 의한 기사 도용 문제로 사내조사 결과, 『요미우리신문』과 『니이가다일보』의 기사를 도용한 2건의 새로운 도용이 더 있었다고 발표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까지 있는 총 3건의 도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담당기자를 해고하고, 武内健二 제너럴매니저(GM) 겸 도쿄 본사 편집국장과 사진센터 매니저를 각각 감봉, 해직했다. 이 밖에도 임원대우 편집담당과 제너럴에디터 겸 도쿄 본사 편집국장, 사진센터 차장 등에게 각각 감봉, 견책, 경고처분 등을 내렸다.

(『신문협회보』, 2007년 2월 13일자)

사례3) 프로그램 날조로 간사이(關西) TV 사장 사임

간사이 텔레비전 방송은 지난 2월 28일 정보 프로그램 「發掘!あるある大事典Ⅱ」의 날조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총무성에 제출, 날조를 예방할 체제를 구축할 책임은 “편성국·제작국 담당임원, 전무, 최종적 책임자인 사장에게 있다”고 경영진의 책임을 명기하는 한편, 새로이 3건의 날조의혹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4월 3일에는 千草宗一郎 사장이 사임하고, 出馬迪男 회장, 角和夫 대표취체역, 山本紘 전무 등

3인은 임원보수 20% 3개월 분을 반납했으며, 상근 임원은 엄중주의처분, 그 밖의 임원, 감사역 전원이 당기(當期)의 임원상여금을 자진 반납기로 하고, 외부인사 5명으로 구성되는 재생위원회를 구성하기까지 했다. 4월 19일에는 민간방송연맹 임시총회에서 제명처분까지 받았는데 프로그램 내용을 둘러싼 제명으로는 처음이다.

문제의 발단이 된 「納豆(나두=끈적끈적하게 발효한 콩)다이어트」 방송분에 대해서는 “방송법에 저촉된다”는 인식을 표시했으며, 보고서는 사장이 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새로운 3건은 「충격! 된장국으로 살이 빠진다」(2006년 2월 19일 방송)외에 「유산소운동의 신이론」(2005년 10월 16일 방송)과 「당신의 다이어트 과일은 어느 쪽? 귤 or 사과」(2006년 10월 22일 방송) 등인데, 해외 연구자의 코멘트에 당사자의 의도와는 다른 일본어를 덮어씌우는 등의 표현이 있었으며 “방송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불충분한 점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인정했다.

(『신문협회보』, 2007년 3월 6일자, 4월 10일, 17일, 24일자)

사례4) 『텔레비전 도쿄』도 영상 날조, 사장 감봉

『텔레비전 도쿄』는 지난 1월 6일 방송된 건강정보 특별프로그램 「올해야말로 깨끗하게 해 줄거야! 정월 비만해소 대작전」에서 텔런트의 손가락 끝이라고 소개한 영상이 실제로는 디렉터의 것이었다고 지난 2월 20일 발표했다.

菅谷定彦 사장은 다음 날 21일의 정례회견에서 “영상의 날조라고 받아들여져도 어쩔 수 없는 심각한 사태”라고 사죄하면서 자신의 감봉 20%(1개월)을 포함한 관계자 4명에 대한 처분을 발표했다.

문제의 영상은 요가를 체험한 텔런트가 그 전후의 혈류(血流)의 변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다. 요가 체험 후의 텔런트의 손가락 끝의 모세혈관으로 소개한 영상이, 실제로는 디렉터의 것이었다. 디렉터가 편집단계에서 한층 더 변화를 명료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손가락을 촬영한 영상을 사용했다는 것인데, PD도 사전 점검 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며 외부의 지적에 의해 밝혀졌다.

(『신문협회보』, 2007년 2월 27일자)

사례5) 『니이가다일보』도 『아사히신문』 사설 도용

『니이가다일보』사는 지난 2월 21일 북한의 납치 문제를 취급한 사설에서 『아사히신문』의 사설로부터 도용한 부분이 있어 이를 집필한 논설위원을 총무부로 대기발령했다고 공표한데 이어 3월 8일에는 새로이 6건의 사설 도용이 발각되어 관련자를 해고했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된 것은 2006년 11월 21일자 사설 「납치피해 인정, 계속 실종자의 조사를」이라는 제목의 사설이다. 조사 결과 6군데가 유사하여 도용으로 판단했으며, 본인도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조사 결과 새로이 밝혀진 6건의 도용은 “사실관계의 기술이 흡사할 뿐 아니라 그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내용의 전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도용은 『아사히신문』에서 3건, 『마이니찌신문』에서 2건, 『니혼게이자이신문』에서 1건으로 되어있다. 이 사건으로 사장은 보수월액 30%(5개월)을 반납하기로 했으며, 그 밖에 많은 임원들과 간부들이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신문협회보』, 2007년 2월 27일자, 3월 13일자) □